36 자동차 변속기 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성별 남성 나이 54세 직종 자동차부품제조직 직업관 련	성 낮음
---	-------------

1 개 요

근로자 ○○○은 1985년 7월 □ 사업장 변속기1부에 입사하여 변속기내 샤프트류 가공업무, 자동변속기 케이스 생산업무 및 반장으로 생산, 인원,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9월 정기 검진으로 시행한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2012년 10월 △ 병원에서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타사업장에서 3년간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1985년 7월 □ 사업장 샤프트라인 부서로 입사하여 변속기 부품가공 업무로 처음 입사 당시에는 변속기 내 샤프트류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변속기 샤프트류 가공업무는 가공될 제품을 직접 투입하여 가공 설비를 운전하는 작동 업무이고 1명이 4~5대의 설비를 관리하였으며 1대의 설비에 가공될 제품을 넣어 가공 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여 다시설비에 제품을 넣어 가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 방문 시에는 과거 공정이 모두 없어졌고 또한 최신 기종으로 많이 바뀐 상태라서 당시 작업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1994년 4월부터 반장 직책을 맡으면서 부서원의 생산, 인원, 노무관리 업무와 변속기 내 부품인 샤프트류를 스틸 재질로 가공하는 업무 및 관리를 수행하였다. 2010년 10월부터 자동변속기 케이스를 알루미늄 재질로 생산하는 업무의 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업무는 알루미늄 자체가 중량이 약 15 kg이고 설비가 자주 고장이 나기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힘들고 15명이 각자 맡은 공정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였다고 하며, 그래서 강제로 온 직원들의 불만과 함침 장비 화학물질 조건 관리로 인하여 반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회사, 노조, 작업근로자 모두 전리방사선, 석면관련 노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5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9월 정기적으로 시행한 위내시경 결과 위암(adenocarcinoma), H. pylori(++)을 진단 후 수술 권유받고 2012년 10월 △ 병원에서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 (Billroth I)을 시행받았다. 수술에서 적출된 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2012,10,10) 결과 조기 위암으로 반지세포암종(Signet ring cell carcinoma)이 확인되었으며, 국소 림프절 전이나 주변조직에 대한 침윤소견은 없었다(pT1aN0M0).

6 고찰 및 결론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근로자는 위암의 직업적 유해요인인 전리방사선과 석면, 그리고 무기납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위암은 헬리코박터균과 같은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